

	행복도시락 정책브리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먹거리돌봄’의 언어로 읽다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역 먹거리돌봄 체계까지
---	--

한눈에 보는 정책 제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되었다.

먹거리돌봄의 현장에서 이 법을 바라보면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법이 만들어지면

혼자 밥을 차리기 어려운 어르신의 식사는 달라지는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주민에게 필요한 식사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가?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에게 카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한 끼를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가?

식사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위험을 발견하면 의료와 돌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하지 못한다면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법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답하기 시작한다면 기본법은 국민의 밥과 건강과 삶을 지키는 법이 된다.

먹거리돌봄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지역 실천모델 중 하나다.

1. 먹거리돌봄에서 출발하면 정책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오랫동안 먹거리를 ‘급식’의 언어로 다루었다.

몇 명에게 몇 끼를 공급했는가, 한 끼 단가는 얼마인가, 누가 조리하고

누가 배송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통합돌봄 시대에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그 사람이 오늘 제대로 먹었는가.
그 식사가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맞는가.
밥을 전달했을 때 사람이 함께 보였는가.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누가 알아차리는가.
위험을 발견했다면 보건소·의료·복지·돌봄으로 연결되는가.
먹거리돌봄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먹거리돌봄은 단순히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다.
먹거리돌봄 = 식사 + 영양 + 건강 + 안부 + 관계 + 지역연결이다.

2.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 ‘먹거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
2026년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국민생활 밀접 4대 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민과 지역을 기반으로 돌봄·의료·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정책협의체 참여와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정책에서도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제시한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다.

먹거리가 농업정책이나 급식정책의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돌봄정책이자, 건강정책이며, 지역정책이고, 사회연대경제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한 끼’에서 읽어보자

기본법의 의미를 조직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원체계, 금융, 공공구매, 정부계획이 먼저 보인다.

그러나 시민의 밥상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

기본법·종합계획의 방향	먹거리돌봄의 언어로 바꾸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시민의 밥을 책임질 주체를 키운다
지역문제 해결	끓거나 잘 먹지 못하는 문제를 지역이 해결한다
통합돌봄 참여	식사를 건강·의료·안부·돌봄과 연결한다
지역 컨소시엄	영양사·조리·배송·의료·복지·주민조직이 함께 움직인다
공공시장	필요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할 시장을 만든다
사회연대금융	조리시설·배송·공공센터 등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한다
전문인력 육성	영양·위생·조리·돌봄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성과	몇 끼를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건강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다
지역계획	지역마다 필요한 먹거리돌봄 체계를 설계한다

결국 기본법은 먹거리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조직을 지원하는 법’에서 ‘좋은 생활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법’으로 읽어내야 한다.

4. 먹거리돌봄은 왜 사회연대경제의 지역특화 모델인가

먹거리돌봄은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 첫째, 매일 시민을 만난다

식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다. 하루 세 번 반복되는 생활이다. 따라서 먹거리돌봄은 사회연대경제가 시민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일상적 서비스다.

■ 둘째,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동도 먹고, 청년도 먹고, 장애인도 먹고, 임산부도 먹고, 고령자도 먹는다. 먹거리에는 세대가 없다. 따라서 먹거리는 특정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넘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셋째, 전문성이 필요하다

좋은 뜻만으로 먹거리돌봄을 할 수 없다. 영양, 식단, 위생, 조리,

원재료, 유통, 배송, 질환과 신체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전문적인 산업이다.

■ 넷째, 지역경제와 연결된다

지역농산물, 식재료 유통, 조리시설, 배송, 일자리,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연결된다. 한 끼의 식사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 돌봄이면서 지역경제가 된다. 그래서 먹거리는 도시락만이 아니다.

“ 먹거리는 돌봄이고, 건강이고, 산업이고, 일자리이며, 지역재생이다. ”

5. 특히 고령자 가구에서 먹거리돌봄을 다시 보아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고령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혼자 또는 고령자끼리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식사의 어려움은 단순한 결식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밥은 먹지만 반찬이 단순해질 수 있고,

장을 보기 어려워질 수 있고,

조리하기 힘들어질 수 있고,

질환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려울 수 있고,

혼자 먹으면서 식욕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고령자 먹거리정책은

“ 굶지 않게 하는 정책 ” 에서

“ 지역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먹는 것을 돕는 정책 ” 으로 발전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지역성과 관계성이 필요하다.

6. 도시락을 배달하는 순간, 통합돌봄의 문이 열린다

먹거리돌봄의 가장 큰 가능성은 식사를 매개로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주 5회 식사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자.
 배송자는 단순히 도시락만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다.
 어제보다 식사를 덜 했는지,
 평소와 달리 문을 열지 않는지,
 몸이 불편해 보이는지,
 대화가 현저히 줄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업로드한 국회 발표문도 이를 ‘식사+안부확인’ 일체형 운영으로 제안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보건소·의료·복지로 연결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락은 상품을 넘어 돌봄의 접점이 된다.
한 끼 → 한 번의 만남 → 하나의 건강신호 → 필요한 서비스 연결
 이것이 먹거리돌봄이 통합돌봄에서 갖는 힘이다.

7. 그래서 ‘먹거리돌봄공공센터’가 필요하다

먹거리돌봄을 확대한다고 해서 단순히 도시락 업체를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전체의 먹거리돌봄을 설계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먹거리돌봄공공센터**라는 지역 생활SOC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센터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다.
 지역의 먹거리돌봄을 조직하는 기능이다.

기능	하는 일
수요발굴	고령자·아동·장애인·퇴원환자 등 필요한 주민 발굴
식단	건강상태·생애주기별 식단 개발
영양	영양기준과 섭취상태 관리
위생	조리·유통·배송 안전관리
공동구매	식재료 공동구매와 가격 안정
생산연계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공급조직 연결
배송	식사전달 체계 구축
안부	식사전달 과정에서 생활위험 발견
돌봄연계	읍면동·보건소·의료·복지와 연결
교육	영양사·조리사·배송인력 전문교육
데이터	식사·건강·돌봄 성과관리

지역순환	지역농산물·일자리·사회연대경제 연결
------	---------------------

새 건물을 먼저 만드는 방식일 필요도 없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복지관, 공공급식시설, 유희공간 등 이미 존재하는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기능을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8. 기본법 이후 만들어야 할 것은 ‘사회적 시장’ 이다

먹거리돌봄이 지속되려면 좋은 뜻만으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수요와 적절한 가격, 전문인력과 시설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경쟁만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라야 한다.

고령자 식사,

경로당 식사,

통합돌봄 식사,

질환·건강상태별 식사,

지역아동센터 급식,

방학 중 아동급식,

장애인 먹거리돌봄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먹거리 서비스를 사회적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공공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가격, 영양, 위생, 노동, 배송, 안부확인, 품질 기준을 정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공급자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공시장은 ‘사회 안’에 뒤야합니다.

9. ‘싼 한 끼’ 에서 ‘좋은 한 끼’ 로 공공조달도 바뀌어야 한다

먹거리돌봄에서 가격은 중요하다.

그러나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결국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식재료의 질, 영양사의 전문성, 조리노동의 사회적가치 인정과 사회성과 연계 채권 도입 특히 통합돌봄의 경우 건강보험기금과 연계한 사회성과 연계채권 제도화 , 배송의 안전, 교육과 품질관리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의 공공 먹거리 시장은 최저가격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서비스 품질을 함께 구매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공공이 사야 하는 것은 도시락 한 개가 아니다.

영양이 갖춰진 한 끼 + 안전한 조리 + 안정적인 배송 + 안부확인 + 필요한 돌봄으로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서비스다.

10. 공동구매도 먹거리돌봄 정책이다

먹거리돌봄의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협동적 규모화**다.

각 지역의 작은 공급조직이 대기업처럼 커질 필요는 없다.

대신 **함께하면 된다**.

공동식단, 공동구매, 공동레시피, 공동교육, 공동위생기준, 공동품질관리, 공동브랜드, 공동데이터를 구축하면 작은 조직도 전문성과 규모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연대경제다운 규모화**다.

조직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11. 먹거리돌봄의 성과측정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 도시락 몇 개를 공급했습니까?”

이것만으로 먹거리돌봄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기존 지표	먹거리돌봄 성과지표
공급 식수	규칙적인 식사 여부
이용자 수	영양상태 변화
예산 집행률	건강위험 감소
배송 횟수	안부확인 횟수

단가	적정 영양·품질
사업체 수	지역 공급역량
일자리 수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
만족도	고립·생활불편 변화
매출	지역경제 순환효과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복지비용의 예방적 절감효과까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돌봄에 사용한 돈을 비용이 아니라 예방적 사회투자로 바라보는 전환이다.

12.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후 ‘먹거리돌봄 지역특화모델’ 을 시작하자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은 이미 통합돌봄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지역 컨소시엄 모델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의 5년 기본계획과 1년 시행계획,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기본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 먹거리돌봄 특화모델」을 만들자.

1단계 :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조사한다.

누가 잘 먹지 못하는가부터 찾는다.

2단계 : 지역 먹거리돌봄 자원을 조사한다.

사회적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영양사·복지관·의료기관·농업·물류·주민조직을 파악한다.

3단계 : 지역형 서비스를 설계한다.

도시는 고립과 건강, 농촌은 접근성과 배송, 초고령지역은 고령자 건강 식사처럼 지역에 맞게 설계한다.

4단계 : 사회연대경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한 조직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전문성을 연결한다.

5단계 : 먹거리돌봄공공센터 기능을 구축한다.

식단·영양·위생·공동구매·교육·배송·돌봄연계를 통합한다.

6단계 : 사회적 시장을 만든다.

지방정부가 공공조달과 통합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한다.

7단계 : 성과를 측정하고 국가모델로 확산한다.

건강 · 고립 · 지역경제 · 일자리 · 사회적 비용의 변화를 측정한다.

13. 국가와 지방정부에 제안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먹거리돌봄을 별도의 작은 사업으로 추가하지 말자.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의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체화하는 지역특화 모델로 먹거리돌봄을 육성하자.

중앙정부는 먹거리돌봄의 최소 영양 · 위생 · 서비스 · 성과기준을 만들고,

광역정부는 전문지원과 교육 ·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며,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전문적인 공급과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 · 복지기관은 건강과 돌봄을 연결하자.

그리고 주민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먹거리돌봄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맺음말

법률의 문장을 시민의 밥상으로 번역하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조직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 법의 효능을 자신의 삶에서 느껴야 한다.

그 시작을 **밥 한 끼**에서 찾아보자.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제대로 된 식사가 도착하고,

식사를 건네는 사람이 안부를 묻고,

건강의 이상을 발견하면 지역의 의료와 돌봄으로 연결하고,

그 밥을 지역의 농산물과 지역의 일자리로 만들고,

좋은 식사를 만드는 사람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돌아가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에 남는다면,

사회연대경제는 더 이상 설명해야 이해되는 경제가 아니다.

국민이 매일 먹고, 만나고, 체감하는 경제가 된다.

업로드한 국회 발표문은 사회연대경제가 더 이상 제도 외곽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활을 실제로 운영해 온 파트너로서 국가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먹거리돌봄은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밥이 약이 되는 사회.

먹거리를 도시락으로만 보지 않고 돌봄으로, 급식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투자로, 공급자를 업체로만 보지 않고 지역의 생활SOC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먹거리돌봄의 언어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